

2009. 7.

수신 : 제천시의회의장

제 목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발의

위의 조례안을 지방자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61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 붙임과 같이 발의합니다.

붙임 1. 발의의원 서명서 1부.

2.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의장		결재	부의장
제천시	16시	국장	2009. 7. 16
의회	제천시의회	감사관	김봉수

발의자 : 김봉수 의원 (서명 또는 날인)

외 3인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발의서명서

의원성명	서명 또는 날인	비고
760-6	2016.6.20	
김병률	2016.6.20	
최기수	S. Kim	
김영섭	2016.6.20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번호	1365
------	------

발의연월일 : 2009. 7. 7.
발의자 : 김봉수 의원외 3인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제64조의2제2항이 2009년 4월1일 법률 제9577호로 일부 개정 됨에 따라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1항(표결의 선포)와 제48조(표결결과 선포)를 해야 하는 장소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보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제천시의회 회의규칙(안 제42조제1항, 제48조)

- 제42조제1항 중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표결하여야 한다.” 를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로 하고
- 제48조 중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선포한다.” 를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 한다.”로 개정함.

붙임 1.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신·구 조문 대비표 1부 끝.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제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 중 “제목을 선포 하여야 한다”를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 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8조 중 “그 결과를 선포한다”를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2조(표결의 선포) ①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할 안건의 <u>제목</u>을 선포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42조(표결의 선포) ① -----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표결결과 선포)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u>그 결과를 선포한다.</u></p>	<p>제48조(표결결과 선포) -----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한다.</p>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64조의2 (표결의 선포 등) ① 지방의회에서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표결 할 안건의 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하고, 의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관하여 발언할 수 없다.
② 표결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하여야 한다.